

2018년도 환경책임보험 갱신 안내

2018년도 '환경책임보험' 갱신을 위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
1. 갱신시기: 2018년 6월 30일까지 갱신 완료
2. 의무가입 대상

구분	보험가입 의무 대상시설
대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(1~5종)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
수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(1~5종)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(무방류시설 포함)
폐기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정폐기물처리시설 *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은 해당없음
토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중 아래시설 - 저장용량 1천kL 이상인 석유류 제조·저장시설 - 위해관리계획서 작성·제출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제조·저장시설 - 「송유관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송유관
유해화학물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위해관리계획서 작성·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*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(제조·사용수량(연간), 보관·저장수량)이상 취급시 해당
해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양시설 중 아래의 시설 -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(비축포함)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- 오염물질저장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

3. 보험료 계산시 수량 산정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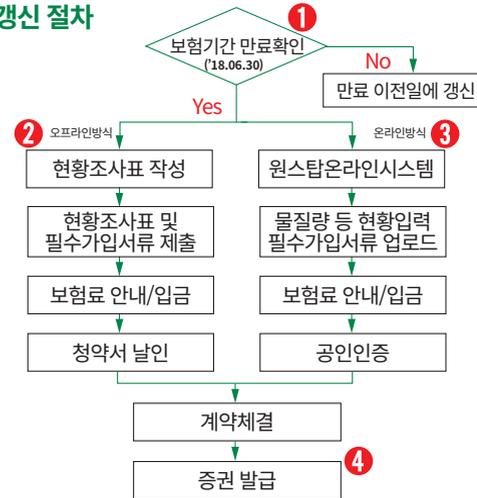
- 1)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: 대기환경보전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연간 배출량의 '용질' 기준 수량
- 2) 폐수배출시설: 물환경보전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연간 배출량의 '용질' 기준 수량
- 3) 폐기물처리시설: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연간 처리량
- 4)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: 토양환경보전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저장용량(허가량)
- 5) 화학물질취급시설: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연간 취급량의 '용질' 기준 수량
- 6) 해양시설: 해양환경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저장용량(허가량)

4. 각 군별 의무가입 보장금액

구분	가 군	나 군		다 군	
		소기업의 시설	소기업외의 시설	소기업의 시설	소기업외의 시설
보장금액	300억원	80억원	100억원	30억원	50억원

※ 자기부담금은 해당 보장금액의 0.5%로 산정
(단, 소기업 중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는 사업장의 수질오염사고에 대하여는 0.25%로 산정)

5. 갱신 절차



- ① 보험기간 만료확인
'18.06.30 만료 계약은 보험 만기일 이전 갱신을 완료해야 함.
- ② 오프라인방식 선택
1단계: 현황조사표 작성
2단계: 현황조사표 및 필수가입서류* 제출
3단계: 보험료 안내/입금
4단계: 청약서 날인
- ③ 온라인방식 선택
1단계: 가입 현황 입력
2단계: 물질명/물질량 등 입력 및 필수가입서류* 업로드
3단계: 보험료 안내/입금
4단계: 청약서 날인(공인인증)
- ④ 증권 발급
*필수가입서류: 사업자등록증, 각종 인·허가증, 물질량 확인자료 등

6. 미가입시 벌칙: 벌칙(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 및 행정처분(6개월이하 영업정지)

7. 문의처: 환경책임보험 전용콜센터(☎ 1670-5420)

※ 보험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8. 시행보험사: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AIG 손해보험

※ 갱신 업무는 대표보험사 DB손해보험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.
※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(www.eilkorea.co.kr)을 통해 사업장에서는 보험가입 설계, 보험료 산출 및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·갱신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.